

瑞山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9. 12. 21
總務委員會

1. 審查經過

가. 提出日字：1999. 12. 14

나. 提出者：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1999. 12. 16

라. 上程日字：1999. 12. 21

2. 提案說明要指(提案說明：自治行政課長 方景泰)

가. 提案理由

- '99 을지연습 평가결과, 「화학공단 소재 시군에 화생방 전담요원이 미배치」 되어 재난발생 취약지역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됨으로서,
- 행정자치부에서 평시 방호능력과 화학공단의 누출사고등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생방 전담인력의 정원 1명을 승인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임.

나. 主要骨子

-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814명”을 “81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799명”을 “800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조례안 제305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표 1중 정원의 총수 “870명”을 “87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55명”을 “856명”으로 하며, 동조 표 2중 정원의 총수 “842명”을 “84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27명”을 “828명”으로 함.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동 개정조례안은 '99을지연습평가결과시 화학공단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 적의 화생방공격 및 재난발생시 취약지역으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 서산시의 경우 지난 '99. 11. 9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화생방 전담인력 “지방별정7급상당”의 화생방 요원 정원 1명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화생방요원을 배치코자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查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122 호
의 결 년 월 일	1999. 12. 24. (제 47 회)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12. 14.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2
----------	-----

제출년월일 : 1999. 12. 14.
제출자 : 서 산 시 장

개정이유

- '99 을지연습 평가결과, 『화학공단 소재 시군에 화생방 전담요원이 미배치』 되어 재난발생 취약지역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됨으로서,
- 행정자치부에서 평시 방호능력과 화학공단의 누출 사고등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생방 전담인력의 정원 1명을 승인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임.

주요골자

-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814명”을 “81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799명”을 “800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조례 제305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표 1중 정원의 총수 “870명”을 “87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55명”을 “856명”으로 하며, 동조 표 2중 정원의 총수 “842명”을 “84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27명”을 “828명”으로 함.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 행자부 자제 12200-683('99. 11. 9) 및 충남 행정 12200-695('99. 11. 18)
 - 화생방 전담기능 인력보강 승인공문

○ 화학공단 및 화생방전담인력 배치현황

대 상 지 역	화 생 방 전담인력 배치	화 생 방 전담인력 미배치	비 고
3개 시군구	· 전남 여수시	· 울산시 남구 · 충남 서산시	

⇒ 화생방 전담인력 미배치 지역 화생방전담 기능인력 보강

○ 행정자치부 정원 승인현황

직 명	직 급	정 원	비 고
화생방요원	지방별정7급상당	1명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814명”을 “815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799명”을 “800명”으로 한다.

조례 제305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표 1의 정원의 총수의 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1. 집행기관의 정원 및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란의 정원란중 “855명”을 “856명”으로 한다.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871명

조례 제305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표 2의 정원의 총수의 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1. 집행기관의 정원 및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란의 정원란중 “827명”을 “828명”으로 한다.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843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814명</u>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799명</u></p> <p>2. (생 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815명</u>----- -----</p> <p>1. ----- : <u>800명</u></p> <p>2. (현행과 같음)</p>																
<p>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조례 제305호) 부칙</p> <p>제2조(정수에 관한 적용례) 서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 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 2를 각각 적용한다.</p>	<p>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조례 제305호) 부칙</p> <p>제2조(정수에 관한 적용례)----- ----- ----- ----- -----</p>																
<p>[표 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구 분</th> <th style="width: 50%;">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870명</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855명</td> </tr> <tr> <td>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 략)</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870명	1. 집행기관의 정원	85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생 략)	<p>[표 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구 분</th> <th style="width: 50%;">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871명</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856명</td> </tr> <tr> <td>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871명	1. 집행기관의 정원	85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현행과 같음)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870명																
1. 집행기관의 정원	85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생 략)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871명																
1. 집행기관의 정원	85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현행과 같음)																
<p>[표 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구 분</th> <th style="width: 50%;">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842명</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827명</td> </tr> <tr> <td>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 략)</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842명	1. 집행기관의 정원	82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생 략)	<p>[표 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구 분</th> <th style="width: 50%;">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843명</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828명</td> </tr> <tr> <td>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84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82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현행과 같음)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842명																
1. 집행기관의 정원	82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생 략)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84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82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현행과 같음)																